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팀장)

○ 먼저, 이러한 토론회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처벌과 관련하여 입법적인 대안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찰의 음란물 차단 노력

가. 웹하드, P2P를 비롯한 헤비업로더 단속

경찰청에서는 음란물의 사회적 피해를 차단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인터넷 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여 12년에 9,169건 9,680명을 검거¹⁾하였고, 13년에는 10월까지 8,294건 8,761명을 검거하였는데,

특히, '12.9월경 연이어 발생한 아동성폭행사건의 범인들이 평소 아동음란물에 탐닉하였고, 결국 실제 주변의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감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동음란물의 피해가 심각²⁾하다는 인식과 함께 경찰에서 이러한 아동음란물이 근절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여

1) 음란물 단속건수 : 6,577건('08) → 5,909건('09)

연도 분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0월
음란물단속(건)	5,909	11,437	10,352	9,169	8,294
음란물단속(명)	6,404	11,811	10,503	9,680	8,761
성인음란물(건)	5,895	11,356	10,254	7,346	
성인음란물(명)	6,383	11,715	10,397	6,408	
아동음란물(건)	14	81	98	1,823	2,654
아동음란물(명)	21	96	106	3,272	2,889

* 13년 아동음란물 단속(건/명)은 '13년 4~10월간 집중단속 자료임

- 2) '10.6월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1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인(김수철)은 범행 전날 52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을 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남.
'12.7월 '통영 초등생 성폭행·살해사건에서 범인(김점덕)의 PC에서 아동음란물 70여편이 발견됨.
'12.8월 '나주 아동 성폭행사건의 범인(고종석)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PC방에서 일본 아동음란물을 즐겨 보았으며 “어린 여자과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적으로 아동음란물 단속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음.

론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아동음란물대책팀’을 구성하여 아동음란물 등의 대표적인 유통 창구인 웹하드·P2P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전시, 소지행위자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토론회 기획안 등에서 거론한 것처럼,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성범죄자 단속을 등한시한 채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에(이른바, ‘실적’ 때문에) 실제 아동성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³⁾

’12년에 음란물의 핵심 유통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등록제⁴⁾가 시행된 후, 미등록 업체를 비롯하여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치 않은 업체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펼쳐 92개 업체를 입건하고, 37개 사이트는 폐쇄하였던 바, 앞으로도 웹하드, P2P 등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⁵⁾

나. 홍보·교육을 통한 국민적 인식확산

’13년에도 4. 1부터 10. 31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였는데, 단속에 앞서 지역 주민, 학생 등에게 접근성이 높은 △ 중앙, 지역 언론사 및 케이블 TV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에 단속 취지, 시기 및 단속대상 등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자정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범죄예방교실을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도 진출하여 음란물의 폐해 및 아동음란물로 인한 처벌정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일각에서는 음란물(일반,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캐릭터가 등장해서 성적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실존하는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1월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

3) 경찰 실무상으로도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제11조의 ‘아동음란물 유통, 소지 등’은 강력범죄가 아닌 사이버범죄(인터넷상 음란물)로 분류하고 있음

4) 전기통신사업법 22조 2항(벌칙 : 제95조 3의2) - ’12. 5. 21

5) ’13년 유통경로별 집중단속 건수 분석(’13.4월 ~ 10월)

구분	합계	웹하드	파일공유(P2P)	SNS(트위터 등)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기타
건수	7647	5646	1463	36	72	116	69	36	209
비율	100%	74%	19%	0%	1%	2%	1%	0%	3%

※ 웹하드(74%) > 파일공유프로그램(19%) > 인터넷 카페(2%) 順으로 배포

죄의 상관관계’ 연구보고서⁶⁾에 따르면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비율은 일반 성범죄자(7%)보다 아동성범죄자(16%)가 더 높았고, 특히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차례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는 5%인 반면 아동 성범죄자는 13.7%로 2배 이상 높으며, 아동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이 일반인은 5.9%, 성범죄자는 10.2%로 후자가 2배 정도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분야에서의 보다 폭넓고 깊은 연구를 통하여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아동음란물의 ‘음란성’ 요건과 관련,

현행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 각 행위⁷⁾의 위법성의 요건은 판례상 음란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그다지 엄격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 시행 초기에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단속 초기부터 “짚구는 못말려”, “은교”처럼 단순한 아동의 신체 노출, 성적 농담이 나오거나, 교복차림의 성인배우가 출연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인으로 인식되거나 ‘음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⁸⁾

다만,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청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정도로 ‘음란’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 노동 또는 성적 착취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고려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⁹⁾

그러므로 최근 경찰에서 단속한 가상 아동음란물(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경찰이 단속하여 관련업체¹⁰⁾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6) 성폭력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사용 빈도, 사용실태, 성범죄 전과경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발생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

7)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항의 행위 및 그 밖의 성적행위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8) 사이버 경찰청 공지사항(아동음란물 ‘소지’ 행위 단속 관련 알림)

9)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을 수집한 성인 남성 24명을 정통방법,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13. 1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0) 관련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인지 의문

○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음란물, 특히 가상캐릭터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이는 곧 경찰의 범집행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과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정착되기를 고대해봅니다.